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00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한규 · 김용민 · 김의겸
박지원 · 서영교 · 김동아
김남희 · 이성운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

제17조의2 전단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법률 제21556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u>지방검찰청 검사장</u> 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u>피해자를 조사하게</u> 하여야 한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 -- <u>지방공소청장</u> ----- ----- ----- ----- <u>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을 하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u>스토킹범죄의 수사에</u>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u>수사 및 사건 처리에</u> ----- ----- -----.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u>법원</u>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u>법원, 검사</u> -----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
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
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
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
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
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
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
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
판에 관한 업무

② (생략)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략)

----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
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

-----.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
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수사, 공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u>조사</u>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u>조사</u>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략)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u>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u> -----.
--	--